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위생경비)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구분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
보훈 특별 고용	공 통			▪ (필수) 인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유선하게 등록된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업무지원직 (고객지원)	간병지원	1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주말 및 휴일, 야간근무 포함) ▪ (우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와래보조	1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우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병원급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업무지원직 (위생경비)	청소	1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5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필수) 휴일(주말) 근무 가능자 ▪ (우대) 의료기관 청소(미화) 업무 경력자

※ 필수 자격요건은 전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운영형태

직 종	고용형태	운영형태 등
업무지원직 (고객지원, 위생경비)	무기계약직	▪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발령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습해제(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 해제) ▪ 임용일 : 2022. 8. 1.(월)

※ 임용일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 근무조건

직 종	직 무	보수 및 기타사항
업무지원직 (고객지원)	공통	▪ 공단 업무지원직 보수지급 시행세칙 적용 - 직무급 1,900,210원(세 전) - 제수당(성과급,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지급 - 복리후생 : 맞춤형 복지포인트(1년 재직 후 발생), 각종 기념품 등
	간병지원	▪ 근무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주말 및 휴일근무 포함) - 08:30~17:30 또는 D(07:00~15:00), E(14:00~22:00) 교대근무 ▪ 업무 : 간병지원, 진료보조, 린넨관리, 환자이송, 환경정리 등
	외래보조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08:30~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업무 : 외래 진료보조, 환자이송, 물품관리, 환경정리 등
업무지원직 (위생경비)	청소	▪ 공단 업무지원직 보수지급 시행세칙 적용 - 직무급 1,809,730원(세 전) - 제수당(성과급,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지급 - 복리후생 : 맞춤형 복지포인트(1년 재직 후 발생), 각종 기념품 등 ▪ 근무시간 (주 간) 06:00 ~ 15:00 (토요일) 08:00 ~ 17:00 (월 1회 이상) ▪ 업무 : 병원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미화) 업무 등

※ 근무 장소, 시간 등은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향후 3교대 근무로 전환할 수 있음

○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가 점
취업지원 대 상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장 애 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전형절차 및 일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일 정

전형구분	일시(예정)	비고(합격기준 등)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인천보훈병원→인천보훈지청)	6.29.(수)	
지원자추천 (인천보훈지청→인천보훈병원)	7.5.(화) 14시까지	▪ 입사지원서 및 추천명단 등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7.6.(수)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개별통보
면접시험	7월 중	▪ 면접점수 60% 미만인 자 부적격으로 불합격 ▪ 면접점수 고득점수 합격
임 용	'22.8.1.(월)	▪ 보훈지청 통보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제출서류

○ 제출서류(인천보훈지청 지원자 추천 시 제출)

구 분	제출서류
필 수	① 입사지원서, 직무능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③ 장애인 증명서 ④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비 고	- 필수서류 및 해당자 서류를 제외한 기타 자격증 등 최종합격 후 제출 -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학력 관련 사항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첨부 양식으로 제출

※ 지원서상 허위 기재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 취소

※ 지원서상 확인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연락 예정으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 기재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요망**

4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incheon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웹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합격자는 지정한 근무일(개별 통보)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직무를 겸무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후보(1배수) 지원 시에도 채용전형은 진행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032.363.9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